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장기등기증의 날 지정 및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                      |   |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                                           |   |
|-------------------------------------------|---|
| 1. 장기등기증의 날 지정 및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 3 |
|-------------------------------------------|---|



## I. 개요

###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3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장기등기증의 날 지정 및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교육급여, 취업보조를 지원하며, 추모기념공원 조성 등 추모·예우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32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 제6조의2(장기등기증의 날 및 생명나눔 주간 지정 등) ① -----<br>-----<br>-----<br>--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하며, 9월-----<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②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br>2.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보 |

|                                                                                                                                                                                                                                                                                                        |                                                                                                                                                                                                                                                                                                                        |
|--------------------------------------------------------------------------------------------------------------------------------------------------------------------------------------------------------------------------------------------------------------------------------------------------------|------------------------------------------------------------------------------------------------------------------------------------------------------------------------------------------------------------------------------------------------------------------------------------------------------------------------|
| <p>② (생 략)</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u>대한</u>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④ (생 략)</p> <p>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u>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p><u>호</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br/>-----<u>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br/>-----<br/>-----<br/>-----<br/>-----.</p> <p>1. <u>추모기념공원 조성</u></p> <p>2. <u>추모기념관 설립</u></p> <p>3. <u>그 외 장기등기증자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br/>----<u>제4항에 따른 사업에</u>-----<br/>-----.</p>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최근 장기이식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장기등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② 장기등기증자<sup>1)</sup> 등에 대한 교육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급여·취업보호를 지원하며, ③ 추모기념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 설립 등 추모예우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 < 최근 3년간 장기 기증·이식 관리 현황 >

(단위: 명, 건, 2023.12월 기준)

| 연도   | 장기기증 대기자 | 장기기증 형태 |                     |              |                       |
|------|----------|---------|---------------------|--------------|-----------------------|
|      |          | 계       | 뇌사장기기증건수<br>(뇌사기증자) | 생체장기기증<br>건수 | 사망자 안구이식건수<br>(사후기증자) |
| 2021 | 45,843   | 5,843   | 1,779 (442)         | 3,995        | 69 (42)               |
| 2022 | 49,765   | 5,268   | 1,600 (405)         | 3,626        | 42 (24)               |
| 2023 | 51,857   | 5,692   | 1,940 (483)         | 3,672        | 80 (37)               |

\* 자료: 보건복지부

## 1) 장기등기증의 날 지정

□ 현행법은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sup>2)</sup>으로 정하고,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및 생명나눔 캠페인 등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개정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생명나눔 주간에 더하여 장기등기증의 날을 지정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역사적 의의나 국가 시책 관련 의의,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제1회(2018.9.10.~16.), 제2회(2019.9.9.~15.), 제3회(2020.9.14.~20.), 제4회(2021.9.13.~19.), 제5회(2022.9.12.~18.), 제6회(2023.9.11.~17.)

국제적 인식,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기념일 주관 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 또한 따져보아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개정안에서 장기등기증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9월 9일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의 날로 정한 날짜<sup>3)</sup>로 국제적

3)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기증의 날’에 대하여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음.(<https://www.donor.or.kr/home/business/promotion02.asp>)

인식, 국민적 공감대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념주간의 첫째 날이 기념일이거나 기념주간 중에 기념일이 있는 다른 입법례와 달리 기념일이 기념주간 중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기념행사 등이 중복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유사 입법례 >

#####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람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2) 장기등기증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추모·예우 사업의 내용 구체화

- ☐ 현행법에 따른 기존의 지원 내용을 보면, 장기등기증자와 그 가족이나 유족, 또는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제비 진

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  
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6조의2에서는 장기등기증  
자 등에 대한 지원과 추모·예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추모 및 예우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  
여<sup>4)</sup>와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보호까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 사업 >**

| 구 분        |       | 내 용                                                                                                                                                                                                                                                                                                                          |
|------------|-------|------------------------------------------------------------------------------------------------------------------------------------------------------------------------------------------------------------------------------------------------------------------------------------------------------------------------------|
| 지 원        | 뇌사자   | • 장제비(360만원), 진료비(180만원)                                                                                                                                                                                                                                                                                                     |
|            | 생존기증자 | • 1년간 정기검진진료비*(최대 70만원)<br>* (간장) 70만원, (신장·췌장·췌도·소장) 60만원                                                                                                                                                                                                                                                                   |
|            |       | •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고용주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원<br>* 최대 30일(단, 골수 및 말초혈은 최대 5일)                                                                                                                                                                                                                                             |
| 추모 및 예우 사업 |       | • 생명나눔 주간(법정) 운영 및 장기등기증자 추모·기념행사<br>- 생명나눔 주간(9월 둘째 주) 중 기념식 개최(유공자 표창 등)<br>• 생명나눔 주제정원* 및 온라인 추모관 운영<br>*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조성('18년) 및 리뉴얼 완료('22년)<br>•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명의 '생명나눔증서' 발급<br>• 기증자·수혜자 간 비대면 서신교환 서비스 지원<br>-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시스템 구축(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br>•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지원 등(한국장기조직기증원) |

\* 자료: 보건복지부

□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교육급여와 취업보호를 지원하는 경우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등의 매매행위가 금지되는바, 장제비·진료비 등 실비 지원을 넘는 수준으로 장기등기증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것은 이러한 현행법의 기본 입장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추모 및 예우사업의 경우도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온라인 기증자 추모관을 운영중이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생명나눔 주체공원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추모기념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설립 등을 추모·예우사업의 종류로 명시하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에서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sup>5)</sup>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장기기증자·가족에게 교육급여 및 취업보호 등 지원은 금전적 보상으로 볼 수 있어 장기기증의 목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는 ‘이스탄불선언6)’의 금전적 보상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비금전적인 예우 중심의 사회적 존중문화 기반 조성 및 확대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현행 법규정으로도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 실시 및 지원이 가능하여 추모기념공원·기념관 사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법에 예우사업의 형태를 명시할 경우 지자체별 추모기념공원·기념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개별 법률에 ‘장기 등 기증의 날’에 대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한의사협회)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교육급여 또는 취업보

---

6) 2008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식학회 및 세계신장학회에 의해 ‘이식관광 및 장기매매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국제회의에서 윤리적인 행위 내에서 뇌사자 및 생체기증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칙과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장기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한 것임.

호 지원은 그와 같은 혜택을 목적으로 원치 않는 장기기증이나 장기매매를 유도할 수 있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09 |

|             |                                                                  |
|-------------|------------------------------------------------------------------|
| <b>[참고]</b> | <b>「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br/>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 사업 관련 조항</b> |
|-------------|------------------------------------------------------------------|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등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